

## 5분 자유 발언

### ○ 김 연 선 의원

#### **예산안 재의요구는 명백한 불법행위, 원천무효**

- 신규 비목 중고생 무상급식 확대사업 163억, 재의요구에서 제외 -
- 지방자치법령, 의결된 내용의 수정 재의요구 금하고 있어 -

#### 1. 예산안 재의요구의 불법성

- 서울시장은 **현행법상 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하여 재의요구할 수 없음에도 위법적으로 '수정하여' 재의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원천무효에 해당된다.**
-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695억 원 등 3,709억원을 증액하고, 서해벚길 사업예산 752억 원 등 3,967을 삭감하였다.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법적 지출해야 할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월 13일 재의를 요구하였다.
- **현행 지방자치법령에는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②).**
- 그러나 서울시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증액 예산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예산 전체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규 비목 설치 예산은 제외하고 재의요구하는 우를 범했다.
- 즉, 의회는 교육협력국 예산 중 조례상 전출금에 포함된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확대 예산 278억원을 학교환경시설개선 등에 사용토록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695억원, '중고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 163억원을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신설하여 의결하였다.
- 따라서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 뿐만 아니라 '중고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 예산'도 재의요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그러나, 2011년도 서울시 예산서와 교육협력국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이 사업을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의 세부 사업에 슬그머니 포함시키는 과감성(?)과 무모함을 선보였다.
- 이는 새로운 비목에 대해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 재의를 요구한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일부 내용을 수정, 재의요구한 것으로 앞에서 말한 '지방자치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며, 따라서 불법에 의해 자행된 이번 예산안의 재의요구는 원천무효가 된다.
- 지방자치법령에서 의결안을 수정하여 재의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단체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변호사 출신의 오세훈 시장이 어리석게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떳떳이 자행하고 있음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
- 하늘 아래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오 시장은 즉각 예산안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하길 기대한다.

## 2. 예비비 사용의 불법성

- 서울시는 지난 2월 16일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예비비에서 42억원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이런 서울시의 조치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는 내재적 제약을 갖고 있다.
- 행정안전부가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예비비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이런 조치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따라서, 서울시가 의회에서 삭감한 42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만약 서울시가 저소득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면 우리 의회가 의결해준 바와 같이 전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면 될 것이다.
- 서울시는 예산집행과 관련해 편법과 규정 위반 등의 꼼수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절대 다수의 시민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피고, 서울시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기 바란다.

### 3. 예산집행의 자의성(교육협력국 조례상 전출금의 임의변경)

-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조례상 전출금 839억원을 포함한 교육협력국 2011년도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다.
- 이 가운데에는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안 695억원, 중학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을 위한 예산 163억원 등 신규비목을 새롭게 설치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시는 시장의 동의없이 증액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포함한 다수의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담하게도 예산서에 별도의 '불법증액'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서울시가 시장의 동의없이 불법증액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여전히 서울시는 스스로의 논리적 함정에 빠져있다.
- 서울시는 저소득층 중학교생 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163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표현대라하면 이 예산은 시장의 동의없이 의회가 불법적으로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 증액한 예산으로 서울시는 집행을 거부하는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예산의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이유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고 있다.
- 물론, 우리 시의회는 저소득 중학교생 무상급식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예산 항목은 시의회가 적법하게 삭감한 이후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끼워 넣은 조례상 전출금이 아니라, 의회가 새롭게 비목을 설치한 예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서울시장의 입맛에 따라 어떤 예산은 불법증액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일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다르게 슬그머니 끼워 넣어서 집행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이 밖에도, 서울시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예산 10억원을 감액해 이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초중등 디자인 교육지원에 배분하는 등 일부 교육경비지원 사업의 경우 시의회의 예산 심의·심의 결과와 다른 집행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 또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의결권에 대한 침해로 불법적 행위이다.